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내

- 대통령령 : 제21540호
- 공포일자 : 2009. 6. 16
- 담당부처 : 전력산업과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별 학력 인정기준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골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어의 뜻을 시행령으로 이관(제2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0조 제1호·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어의 뜻을 시행령 제2조 제5호·제6호로 이관

■ 설계감리 대상기관 정비(제18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기획예산처 고시로 확인)으로 변경하고
- 환경관리공단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를 승계한 한국환경자원공사(舊한국자원재생공사, '80. 9설립)를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며
- 종전에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었으나 공기업에서 제외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공사, Kotra를 종전과 같이 대상기관으로 반영
 - ※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는 공기업에 포함

■ 자체감리 대상기관 정비(제20조)

- 제1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자체감리 대상기관이 정비
※ 종전의 대상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추가되는 결과

■ PQ 대상기관 확대정비(제27조의2)

- 부록 참고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30조)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별표(과태료 부과기준)만 남기고 다른 규정은 삭제
※ 시행규칙 개정 시 제35조도 삭제 예정

■ 전력기술인 등의 학력 산정기준 법령화(별표 1·2 각 비교)

-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별 학력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변경내용 없음)

■ 그 밖에 개정내용

- 제2조제2호의 “전력기술용역” 정의 삭제
(2002년도 제10조제1항이 삭제되면서 법 제8조로 올라감. “전력기술용역”이라는 용어는 제10조제1항에만 사용되는 용어로 더 이상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 ☞ 시행규칙도 정비 예정
- 그 밖에 일부 조문 순서가 조정되거나 용어·표현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2009-437호
- 예고기간 : 2009. 5. 25~6. 15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02-2110-8213)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itm.go.kr)

◎ 개정이유

자연환기설비의 객관적 설치기준과 음용수용 급수관의 자재·제품 기준 및 음수대용 급수배관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환기·급수 설비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건축법) 추가

- (1) 2008년 7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 온도의 설치기준 및 제13조제3항 개별난방설비 조항의 근거법률로서 건축법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 조항을 추가함

나.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 (1)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곤란함
- (2) 해당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를 증가시키는 규제로 작용함
- (3) 신규 제정('08. 12월)된 한국산업규격 KSF2921(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은 자연환기설비를 별표1의3의 기준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객관적 평가 기준과 심의 두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4) 기계환기설비 외에 자연환기설비도 적정하게 설계, 시공,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

다. 음용수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자재·제품 기준 규정

- (1) 음용수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급수관에서 부식 및 청수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됨

- (2) 이러한 음용수용 급수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사용을 규정함

라. 음수대용 배관설비 설치기준 신설

- (1) 수도물이 위생상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끊여 마시거나 생수 구입 또는 정수기를 사용함에 따라 CO₂ 발생량 및 경제적 손실이 증가됨
- (2) 다중이용건축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상수도로부터 직접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층에 한하여 해당 수도물을 음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공용공간에 별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의 근거법을 변경

- (1) 건축법 제91조제2항이 제91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규정 적용 기준 개선

- (1) 건축물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된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 취지와 다르게 개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작용되고 있음
- (2) 공장 등과 같이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용도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함에 따라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열손실 방지규정을 예외 적용토록 규정을 개선함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1)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큰 개별 냉·난방설비(EHP : Electric Heat Pump, 전기 구동 히트펌프 냉·냉난방기 또는 GHIP : Gas engine Heat Pump, 가스 엔진 구동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
- (2) 제도 운영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큰 건축물임에도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이 발견됨
- (3) 건축물의 냉·난방방식에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추가로 발견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 유권해석

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의 소속직원이 자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담당업무를 공사감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의 소속 직원이 담당업무를 전기공사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자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5)

02

2006. 6. 30일 이후 경력에 의한 등급(초급)을 발급받은 자가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유효기간(2007. 6. 25)이후 중급감리원으로 등급변경이 가능한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2006. 6. 24일부터)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등급 및 감리원 등급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경력자로서 초급기술자 또는 초급감리원 자격을 받은 자는 개정규정 적용일 이전까지만 종전규정에 따라 승급(중급기술자 또는 중급감리원) 할 수 있으며, 개정규정 적용일 이후부터는 현행규정에 따라 승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0)

03

양도인(전기 종합감리업, 전기 전문설계업2종)과 양수인(측량업, 토목구조엔지니어링 : 전기설계·감리업 없음) 상호간의 전기 설계·감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적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와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시 양수인의 회사에 전기 설계·감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법인 합병시에는 양수인의 회사에 전기 설계·감리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을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9)

04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지상22층/지하4층, 연면적 25,000㎡)에 전기감리회사와 건축감리회사가 감리업무수행시 전기감리원은 건축책임감리원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보조감리원이라고 하는데, 건축감리원이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는지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기감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에 의거 감리업무에 대한 지시 및 통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은 전기감리원의 직무이므로 건축감리원은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생활속 법령상식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법원의 판사는 위자료 지급을 명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주지는 않으므로,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한다.



글 | 박종복 변호사

Q 본인은 중국동포로서 약 7년전 현 남편과 결혼하여 살아왔다. 최근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접수시켰다. 법원에서는 약 1달후 출석하라고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위자료도 알아서 결정하여 주는가? 슬하에 자녀는 없고,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다.

A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은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③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④ 일정한 숙려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경과한 후, ⑤ 법원의 판사 앞에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뒤, ⑥ 당사자 일방이 3개월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기준지(과거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귀하는 현재 위 ①, ②, ③단계를 거치고 제④단계, 즉 숙려기간(1개월)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법원의 담당 판사는 당사자간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기 이전에 남편과 별도로 위자료 액수를 합의하고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 내든가, 그렇지 않고 남편과 사이에 위자료 지급 여부, 지급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고 조정 또는 재판을 받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